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387호
2. 발 의 자 : 이민옥 의원(찬성자 28명)
3. 발의일자 : 2025년 02월 03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02월 06일

II. 제안이유

- 서울시 산하 출자·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·감독이 어려운 실정임.
- 특히 성희롱·성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심의기구 구성에 있어 기관별 차이가 있어,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.
- 이에 출자·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또한 서울시가 출자·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, 기관별 편차 없이 통일된 윤리경영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가. 시장이 출자·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안 제11조의2제1항)

나. 시장이 출자·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2제2항)

Ⅳ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개정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출자·출연기관별로 상이한 윤리경영 체계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이 출자·출연 기관의 윤리경영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됨.

2.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한 윤리경영 규정 추가

- 정부는 일부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을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2018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‘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’ 등이 제기됨에 따라 1,205개 공공기관¹⁾에 대하여 ‘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’를 실시(2018.11.06.~2019.01.31.)하고,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였음²⁾.
- 이와 함께 정부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공공기관 관련 법률에 인사채용비리, 성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자에 대한 수사·감사 조치와 윤리경영 강화 노력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,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편람에 윤리경영 관련 지표를 신설한 바 있음.

< 윤리경영 관련 관계 법률 내용 >

구 분	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	지방공기업법	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관련내용	제48조제4항 - 경영실적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	제63조의7제1항 및 제2항 -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노력 의무	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- 출자·출연 기관의 윤리경영 노력 의무

1) 정부공공기관 333개, 지방공공기관 634개, 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개

2) 수사의뢰 : 36건, 징계·문책요구 : 146건

나 거짓으로 작성·재출할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수정, 주의·경고조치 및 관계자 인사상 조치 요구, 불이행시 책임자 해임 및 해임건의 제50조제2항 -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 가능 제52조의3제1항 및 제2항 -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 의무 -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윤리경영을 저해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 및 감사의뢰권한 및 직무정지권한 부여	- 자치단체장에게 윤리경영을 저해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 및 감사의뢰권한 및 직무정지권한 부여 제78조제6항 -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주의·경고조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기업의 평가급 조정 요청하도록 함.	- 자치단체장에게 윤리경영을 저해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 및 감사의뢰권한 및 직무정지권한 부여
---	--	---

- 그러나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6개 공기업 및 16개 출연기관의 개별 근거 조례나 출자·출연기관에 관한 기본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는 윤리경영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태임.
- 또한 각 기관별 성비위 등의 중대한 윤리경영 저해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정수와 구성, 심의절차 등이 상이하고, 공통된 표준교안이 없이 개별 기관별로 윤리경영 관련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의 형식화가 우려되는 상황임.
-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장으로 하여금 윤리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하고,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

보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취지와 그 내용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입법조사관	연락처
최범준	02-2180-8056